

## 2) 관련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관련 혜택을 받고자 할 시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이 중견기업 지원관련 혜택을 받고자 할시 작성하여 첨부로 제출
- 본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가능

### 각서 [별지 제52호서식]

- 대표자 작성란에는 온라인 추천신청 시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 부분 직인란 또한 대표자(신청자) 본인의 직인을 찍어야 함

### 융자금 대출심사가 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서식]

- 자금 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이며, 본 서류가 제출되어야 만 자금신청이 가능함
- ※ 금융기관은 단위수협, 제2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등) 제외

###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 추천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추진완료 후 최종 자금 인출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양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발급번호 : 제0000-000호>

##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 각 서

업체명(신청인) :

투자소재지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의 규정과 금융지원 승인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금융지원대상 사업자
2. 금융지원대상 시설
3. 금융지원신청서상의 기재내용
4. 금융신청 구비서류

위 사실이 허위거나 기타 금융지원 승인조건에 위배될 경우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용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  
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대표자 : )

◆ 투자지 주소 :

◆ 대상 시설명 :

◆ 용자신청 예정금액 : 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이 확인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의거 금융기관이 자금  
신청자의 담보물건 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 준 공 사 진

촬영일자 : 20 . .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사업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최종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속사업(다년도 진행 사업)의 경우 매년 마지막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당해년도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사업 최종 종료년도(마지막 연도)에는 '추천번호'란에 사업진행 매년의 추천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매년의 내용을 다 합한 누계 개념으로 1건의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3. "추천시설"은 추천서의 추천시설명세에 표기된 주요설비 위주로 작성한다.
4.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는 추천시설과 실제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는지 비교·확인하여 작성한다.
5. "추천액 및 대출금액"은 추천신청 시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과 추천액, 실제 공사완료 후 발생한 실제 대출(인출)금액,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하는 자금 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합계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가 날인하고,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7. "첨부서류"의 '준공사진'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과 촬영일자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8. 작성완료 후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